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50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1. 11.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2019. 6월 초, “00하면 □□□”, “00하면 ■■■■” 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을 ●●●(피해학생)가 직접 □□□과 ■■■■에게 알려주었고, 이 때 ●●●가 놀리는 학생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

가 고자질하였다고 말하여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담임 선생님 앞에서 오해를 풀었으나, 서로간의 갈등은 계속 발생하였고, ●●●는 2019. 6월경 부터 청구인 및 △△△, ☆☆☆, ◇◇◇, ▲▲▲, ◆◆◆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였다며, 2019. 7. 9. 청구인 외 5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학교측에서는 2019. 7. 18. ~ 7. 19. 총 2회에 걸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함.)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학교폭력 신고자인 ●●●를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인정하는 처분 결의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3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9. 9.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2019. 7. 1. 점심시간 후, 청구인(0반)은 복도에서 △△△과 놀고 있던 중, ▲▲▲(0반)가 ●●●(0반, 피해학생)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0반으로 간다는 것을 듣고, 청구인과 △△△은 ▲▲▲를 따라갔고, ▲▲▲가 ●●●를 불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리를 떠나 당시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 스포츠시간에 피구를 하는 과정에서, ●●●가 청구인에게 공을 던지라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공을 안 던진 사람 없이 모두 던져야 하는 룰이 있어 △△△에게 패스해주었고, 이 모습을

보고 ●●●는 “지 맘이어서 나한테 패스 안 해준다” 고 일부러 친구인이 다 들리게 뒤에서 투덜거리면서 욕하고 화를 내며 수업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을 하였고,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수치심을 겪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친구인이었다

다. 0반 남자애들이 “~~~하면 □□□(0반), ~~~하면 ■■■(0반)” 하면서 놀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가 ■■■과 □□□에게 “▼▼▼가 놀리며 다닌다” 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과 □□□이 ▼▼▼에게 찾아가 따지게 되었고, 당시 모여있던 아이들이 “누가 ▼▼▼가 □□□과 ■■■을 놀렸다고 얘기했냐” 고 묻자, ●●●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고 하였고, 친구인은 ●●●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 “●●●야, 너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이후 ●●●는 많은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자꾸 지랄하고 다닌다” 며 친구인이 다 들리도록 욕을 하고 다녔으며, 이에 친구인은 굉장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라. ●●●는 친구인이 헐박했다고 주장하나, 친구인은 ★★★과 만나서 학교 이야기를 나누다가 ▼▼▼ 사건 때 ●●●가 많은 아이들 앞에서 친구인이 다 들리게 욕을 해서 수치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 후에 친구인과 ●●●가 화해도 하고 좀 편한 사이가 되었기에 순수한 마음에 ★★★을 만나 에피소드같이 말했던 것으로, 절대로 ●●●를 겁주려거나 헐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와 친구인의 대화 중, 김다은이 ●●●에게 “★★★, 슴슴이 언니랑도 친해” 라고 말한 부분은 ●●●가 부풀려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잘못된 추측으로 신고한 내용이다.

마. 담임선생님이 반장에게 떠드는 사람, 자는 사람, 옆드린 사람 이름을 적도록 시킨 학급일지가 있는데, 반장이 여행을 가면서 @@@이 맡기로 하였고, @@@이 결석을 하자 ●●●가 맡게 되었으며, 반장이 돌아왔음

에도 ●●●는 학급일지를 돌려주지 않고 학급일지에 청구인과 △△△ 이름을 많이 적어 놓았고, ●●●는 다른 친구들의 이름은 적었다가도 ●●●와 친한 아이들은 ●●●에게 가서 이름을 지웠으며, 이 건은 ●●●가 학급일지를 임의로 가져가 이상한 권력을 휘두르며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바. 담임선생님이 반장에게 떠드는 사람, 자는 사람, 옆드린 사람 이름을 적도록 시킨 학급일지가 있는데, 반장이 여행을 가면서 @@@이 맡기로 하였고, @@@이 결석을 하자 ●●●가 맡게 되었으며, 반장이 돌아왔음에도 ●●●는 학급일지를 돌려주지 않고 학급일지에 청구인과 △△△ 이름을 많이 적어 놓았고, ●●●는 다른 친구들의 이름은 적었다가도 ●●●와 친한 아이들은 ●●●에게 가서 이름을 지웠으며, 이 건은 ●●●가 학급일지를 임의로 가져가 이상한 권력을 휘두르며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사. ●●●는 실제로 따돌림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가 체육시간 및 하교할 때에 청구인과 함께 있는 친구를 데려갔으며, 또한 ●●●와 @@@은 쉬는 시간마다 청구인을 위아래로 훑으며 찌려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따돌리는 가해행위를 하였다.

아. 2019. 7. 1. 사건 당일 4층 컴퓨터실에서 진술서를 쓰고, 청구인은 ●●●와 화해를 시도하려 했지만, ●●●는 화해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0반 담임교사는 청구인의 화해 의지가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중재의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 측의 진술서만을 토대로 나머지 아이들을 가해자 취급하였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에서는 특정인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한명도 빠짐없이 직접 청취하였고, 관련학생들 모두 자신의 보호자와 함께 회의실에 입실하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

나. 또한 본 사안의 초기 대응 및 관련조사에 참여했던 여러 명의 교사들을 참고인으로 입실시켜 자치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한 수많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사안의 정황을 판단하였고, 특정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다면적인 질의와 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도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실제로 자치위원들은 2019. 7. 18.에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2019. 7. 19. 자치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각 관련학생들에 대한 가해정도의 경중을 따졌고, 개별 학생에게 그에 맞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 절대로 가해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의 청구사유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로부터 받은 피해에 관한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자치위원회에서 ●●●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 그에 맞는 조치를 내린 바 있고, 청구인 또한 다른 관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가해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이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급번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전부터 가해학생이라 불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9.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최초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이후 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대신 “관련학생”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고, 본 사안의 경우 관련학생들의 입장이 서로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치위원회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1) 2019. 6월 초, “00하면 □□□”, “00하면 ■■■■” 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을 ●●●가 직접 □□□과 ■■■■에게 알려주었고, 이 때 ●

●●●는 놀리는 학생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가 고자질하였다고 말하여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담임 선생님 앞에서 오해를 풀었으나 서로간의 갈등은 계속 발생하여, ●●●는 2019. 6월경부터 청구인, △△△, ☆☆☆, ◇◇◇, ▲▲▲, ◆◆◆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2019. 7. 9. 청구인 학생 외 5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학교측에서는 2019. 7. 18. ~ 7. 19. 총 2회에 걸쳐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학부모회의를 통해 선정된 학부모위원 5인, 외부위원 2인, 교사위원 2인으로서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7. 18. 회의에는 9명 중 6명(간사 1인 제외)이 참석하여 개최된 후 도중에 외부위원 1인의 중도 퇴장으로 총 5인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19. 7. 19. 회의에는 재적위원 9명 중 5명(간사 1인 제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이러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청구인, ●●● 및 ☆☆☆을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가 자신을 포함하여 6명의 다른 학생(△△△, ☆☆☆

☆, ◇◇◇, ▲▲▲, ◆◆◆)으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학교에 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로 학교폭력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피청구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통지서를 보더라도 어떤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 우선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청구인은 비록 ●●●가 학교폭력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의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오히려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뿐 학교폭

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행위를 청구인의 학교폭력행위로 본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어떤 욕설과 어떤 따돌림 행위가 있었는지 그 대상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② 제출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양일간에 걸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면서 많은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관련학생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에 앞서 관련자 학생들이 어떤 행위를 하여 가해학생이며, 어떤 피해를 입어 피해학생인지를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 학교폭력신고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아도 특정하기 어려운 점,(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어떤 학교폭력 행위로 가해학생으로서 처분결의를 한 것인지, 어떤 피해를 입어 피해학생으로서 처분결의를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이 사건 처분 내용을 기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통지서의 조치원인란에는 “●●● 학생과 보호자는 2019년 6월경부터 ●●●가 ▽▽▽, △△△, ☆☆☆, ◇◇◇, ▲▲▲, ◆◆◆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였다며 이를 학폭으로 신고함” 으로서 기재된 후 조치사항란에는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인 사실만 기재하여 통지하였을 뿐 어떤 행위로 가해학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점,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이후 만일 피청구인이 본 심판청구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분류하여 처분을 하려면 그 대상행위를 특정하여 다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